문서번호	자산관리과-8711
결재일자	2015.7.13.
공개여부	비공개(5)
방침번호	

시 민		
주무관	재산정책팀장	자산관리과장

국·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계획

2015. 7

서울특별시

재 무 국
(자산관리과)

전송일 자산관리과 2019-09-18 11:08:20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국 · 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약 체결 계획

> 국·공유 상호 점유재산간 소유와 점유 일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우리시 간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함.

☐ 추진경위

○ '14. 3.30 : 국·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추진계획(시장 방침 제91호)

○ '14. 6.30 : 일괄교환 관련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

- (국) 75필지, 152천㎡, 3,273억원 (시) 209필지(87동) 3,268억원 3,630천㎡

○ '14.7~'15.7 : 일괄교환 목록(안) 관련 협의

○ '15. 7.8 : 일괄교환 목록(안) 통보(기재부→서울시)

○ '15. 7.13 : 일괄교환 목록(안) 회신(서울시→기재부)

☐ 교환재산 개요

서울특별시

○ 교환대상

구 분	필지(동)	면 적	재산가액	교환차액
국유재산	68	108,488.20㎡	278,538,793,900원	207,812,620원
시유재산	164(15)	3,559,495.27㎡	278,330,981,280원	

○ 교환가격 산정기준

- 토지는 개별공시지가, 건물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방식으로 산정

○ 주요교환재산

- 국유재산 : 세종문화회관(2,630억원) 물재생센터 일부(48억원) 등
- 시유재산 : 구로경찰서(437억원) 중랑경찰서(170억원) 경호동(9억원) 등
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※ 일괄교환 관련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후 교환대상 일부 축소

▶ 교환 제외 국유재산 : 중랑 · 탄천 물재생센터 일부, 남산공원 일부
▶ 교환 추가 국유재산 : 서서울공원, 8차선 도로 등 공공용재산 일부
 ⇒ 교환대상에 추가된 재산의 경우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, 시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교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.
▶ 교환 제외 시유재산 : 경찰청 점유중인 건물 및 토지 일부

☐ 교환절차

교환방침 수 립	⇒	시 의 회 관리계획	⇒	건 물 감정평가	⇒	교환계약 체 결	⇒	소유권 이 전
‘14.3.		‘14.6.		‘14.7.		‘15.7.		‘15.7~8.

☐ 향후일정

○ **교환계약 체결**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**‘15.7.14(화)**

○ **교환차액 지급**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**‘15.7월**

○ **소유권이전**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**‘15.7~8월**

○ **재산관리관 지정**(취득 국유재산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**‘15.8월 중**

붙 임 : 국·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교환 목록 1부. 끝.

서울특별시
전송일 자산관리과 2019-09-18 11:08:20
전송일 자산관리과 2019-09-18 11:08:20
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